

학 생 회 칙

제 정 : 2003. 10. 1
개 정 : 2004. 11. 1
개 정 : 2020. 5. 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금강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치능력과 지도력을 신장하여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금강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학사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② 본교의 학사과정 재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해당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본교의 학사과정 휴학생은 준회원이 되며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한다. 단, 학생자치기구의 정·부대표자거나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큼,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회칙이 정한 바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2.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5조(회원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이 정한 바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2.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본회의 운영 전반에 참여할 권리
4.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기능) 본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학술, 문화 및 체육활동
2. 기술 및 근로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기타 학생자치 활동

제7조(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집행부,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 학생회, 인수인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8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9조(규제사항) 본회 회원은 대학의 운영권 및 교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2장 학생총회

제10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기구로써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권한)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2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13조(소집) 학생총회는 회원들의 협의를 거쳐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학생회장단

제15조(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고, 총학생회 집행부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및 회원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본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위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2학기 종강 익일로부터 익년 2학기 종강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선거 다음해 제·보궐선거로 당선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할 권한
2.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3. 대의원회의 소집요구
4. 총학생회 집행부 구성권 및 임면권
5. 총학생회 집행부 지휘·감독권
6. 회칙 개정의 발의 및 공포
7. 총학생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8. 별도기구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총학생회 집행부

제18조(지위) 총학생회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9조(구성) ① 총학생회 집행부는 각 국서의 국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국서의 국장 및 차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면한다.

제20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집행
2. 학생총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업무 집행
3.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 집행
4. 집행부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서를 두며, 각 국서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가. 기획국 : 본회 제반사업의 기획, 운영
 - 나. 사무국 : 서무, 행정 및 기타 제반업무
 - 다. 재정국 : 회계업무
 - 라. 미디어홍보국 : 학술, 예술 활동 및 동아리에 관한 제반업무, 본회의 문화 및 홍보에 관한 제반업무

마. 학생복지국 : 학생복지 및 체육활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제반업무

제5장 대의원회

제21조(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2조(임기) 대의원 임기는 매년 3월 2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1학년은 선출된 날로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3조(구성) 대의원회는 각 전공(학과)별 총 대표 대의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 단 또는 총학생회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회 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제24조(의장) ①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본회 및 회원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본부에 건의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5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
2.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3. 총학생회비 심의 및 승인권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
5.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권
6. 대의원 의장의 선출권
7. 감사결과 부정 발견 및 불공정행위 적발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 징계 요구권
8.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
9. 전체 학생의 여론 수렴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5월 및 9월과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제적대의원 1/2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 소집은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의결) ① (일반정족수) 제26조에 규정된 대의원의 의결사항 중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의결된다.

② (특별정족수) 제26조에 규정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중에 제1항은 제적대의원 2/3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6장 동아리연합회

제28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본교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와 그 구성원으로 한다.

제29조(회장) ① 동아리연합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은 1개 이상의 동아리에 가입한 자로 하며, 각 동아리 대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동아리간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 할 책임 있다.

제30조(동아리대표) 동아리대표자는 각 동아리의 회장, 부회장을 두며 필요 시 각 동아리회장이 판단하여 직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는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동아리활동에 관한 제반지원을 한다.
2. 각 동아리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을 수립하여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한다.

제32조(회칙) 동아리연합회의 기타 세부사항인 동아리연합회칙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33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3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부국장으로 구성한다.

제35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2. 총학생회의 사업전반 제반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3. 총학생회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4. 결산보고를 검토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5.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7.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8.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9.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36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4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7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학부학생회

제38조(지위) 학부학생회는 학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학부학생 자치활동의 중심기구이다.

제39조(구성 및 조직) ① 학부학생회는 해당학부의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② 학부학생회는 학칙 및 학생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

제40조(학부회장 선출) 학부회장은 각 학부별 학생회장이 주관하는 선거관리에 따라 선출한다.

제41조(학부회장 권한) 학부회장은 학부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부 학생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제42조(전공 대표) ① 전공별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의 대표를 둔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3. 학생단체 지도교수의 인준을 받은 학생

② 전공 대표는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대의원 자격) 학급대표는 본회의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9장 인수인계위원회

제44조(목적) 인수인계위원회는 본회의 정상화와 연속성 유지를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구성) ① 인수인계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② 전공 별 대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부인수인계위원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6조(업무 및 권한) ① 인수인계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정·부인수인계위원장(이하 '정·부위원장')은 정·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집행위원은 총학생회 집행부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47조(명칭) ① 인수인계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금강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인수인계위원회'로 하며 약칭으로 '금강대학교 인수인계위원회'로 한다.

② 인수인계위원회 앞에 해당 년도를 기입할 수 있다.

제48조(직무대리) 위원장이 개인적 사유 또는 졸업 등의 사유로 인해 사퇴하였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9조(해체) 해체는 재선거에서 총학생회 정상화가 실행될 경우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해체한다.

제50조(기타) 기타 또는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칙과 관례를 준용한다.

제10장 재 정

제51조(경비) 총학생회의 경비는 총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한다.

제52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학기 종강일 익일부터 익년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회계연도는 1학기를 1기로 하여 2기로 나누되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53조(예산) ① 예산은 집행부가 각 학생회 기구별 및 사업계획 항목 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심의 조정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집행부는 대의원 소집 10일전에 예산안을 공포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을 받은 대의원회는 5일 이내에 심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비 관리는 집행부의 재정국에서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학교당국과의 협의 하에 총학생회장이 집행한다.

⑤ (가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기간 안에 본 예산이 통과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준한 가예산을 2개월간 집행할 수 있다.

⑥ (경정예산) 예산 수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을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⑦ (집행예산) 예산 집행 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 하고 집행부의 재정국은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해야 한다.

⑧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결산안은 운영위원회가 일괄 작성하여 대의원회와 대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선 거

제54조(선거의 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제55조(선거의 시기)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 정·부의장 선거는 구성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의원회의에서 실시한다.

③ 전공 별 대표 선임은 각 전공별 회의 등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제5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각 선거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① 선거권

1. 총학생회장단 : 정회원
2. 대의원회 의장 : 전공 별 대표 대의원
3. 동아리연합회 회장 : 동아리 대표

② 피선거권

1. 총학생회장단 선거 : 정회원
2. 대의원회 의장 : 전공 별 대표 대의원
3. 동아리연합회 회장 : 정회원

제57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대의원회 의장, 동아리연합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1. 학칙에 의거하여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자
2. 당해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5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대의원 전원과 총학생회 집행부 국장 3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강대학교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9조(입후보) ① 정후보자와 부후보자는 2인 1조가 되어 공동 입후보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강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투표) 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 대면 투표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투표 등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1조(당선) ①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에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단독후보의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62조(재선거) 재선거는 선거의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제63조(보궐선거) 재선거에서도 당선인이 없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64조(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정을 제외하고 정식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65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강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제11장 세칙 및 규칙

제66조(세칙 및 규칙) ① 본회는 본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개정한다.

② 본회는 본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7조(해석) ①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본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③ 본 회칙에 위반되는 본회 기구의 회칙과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제68조(규정집) ① 본회는 「학생회칙」을 전산화된 형태의 규정 정보로 제공하여 본회 회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대학본부에 업로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회 기구는 규정의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장 회칙개정

제69조(발의) ①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 재적대의원 2/3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 발의
3.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

② 발의 시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제70조(의결, 공포) 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의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포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개정회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2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개정회칙 중 제57조 2호, 제59조 2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회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